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민보건과 의료 및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은 「경북보건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 대학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168」에 둔다.

**제3조의2(건학이념및건학이념추진개념[본조신설 2013.03.01.]** 본 대학 건학이념 및 건학이념 달성과 관련한 개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추진한다.

1. 대학 교훈: 근면(勤勉)·성실(誠實)·정직(正直)
2. 대학 건학이념(설립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근면·성실·정직」한 인재양성을 위해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전문적인 실무기술을 바탕으로 현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
3. 대학 사명: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1) 교육품질의 향상을 통해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합심하여 노력한다.
  - (2) 도덕성과 인격, 민주적 품성을 함양하고 근면·성실·정직을 실천한다.
  - (3) 헌신과 봉사하는 자세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4) 지성과 덕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춘다.
  - (5) 글로벌 의식과 식견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4. 대학 교육목표: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1) 본 대학은 틀에 고정된 이론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한다.
  - (2) 본 대학은 전문적인 실무기술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도전을 통해 직업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주인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5. 대학 비전: 「인간존중의 전문인재 양성으로 미래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혁신대학」으로의 발전을 지향한다.[개정 2014.03.01., 2019.10.25.]
6. 대학 인재상: 인성·창의성·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휴먼케어 전문인재[개정 2014.03.01.]
7. 대학 특성화: 보건복지 분야 PINES 으뜸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가치 창출 대학[신설 201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4.03.01.[개정 2019.10.25.]

8. 대학 특성화 목표: 시니어사회 글로벌 으뜸 보건인재 양성[신설 2014.03.01.]

**제4조(설치학과및입학인원)** ①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3.01, 2012.03.01., 2012.10.10., 2013.03.01., 2014.03.01., 2015.03.01. 2017.08.28., 2019.03.05., 2020.02.28., 2020.04.08., 2022.08.19]

계열	학과	입학정원	수업연한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235명	4년
	작업치료과	24명	3년
	뷰티디자인과	30명	2년
	보건복지과	51명 (주간: 20명) (야간: 31명)	2년
인문사회계열	스마트물류과	20명	2년
계		360명	

② 제①항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를 폐지할 수 있으며, 학과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02.28.]

**제4조의2(계약에의한학과의설치운영)**[2017.08.28. 개정]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함)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과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학과운영규정(GCH-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다만 3년과 4년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는 학과로 한다.[2017.08.28. 개정]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등록하지 않는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학기제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개시일 2주에서 4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후에 할 수 있으며, 산업체위탁과정, 계약학과 등 산업체와 별도 협약을 통해 개설되는 과정은 개강일과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2017.08.28. 개정]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제1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공휴일
2. 개교기념일: 4월 12일
3. 일요일
4. [삭제 2023.02.24.]
5. 근로자의날 [신설 2019.10.25.]

② 하계방학·동계방학기간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론·실험실습교육 및 기타 필요한 학습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02.24.]

**제10조의2(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3월 10일 이전으로 한다. 단, 재입학 및 편입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1/4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으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제13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입학전형)** 신입생 입학전형은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 입학전형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4.03.01.]

**제14조의2(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3(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4(대학입학전형선행학습영향평가[본조신설 2015.03.01.])** ①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허가및등록)** 입학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단, 간호학과와 의과대학의 경우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간호학과운영위원회 심의를 경유하여야 한다.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3.01]

**제15조의2(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5. 본 대학 또는 타 대학에서 제적된 자로서 입학한 자[신설 2011.03.01]

**제16조(산업체위탁교육과정운영)** ① 총장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부담 및 납부 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기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편입학)**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전적교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간호학과 정원의 학사 편입학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한다.[개정 2019.10.25.]

- 제17조의2(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신설 2019.03.05] ① 편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편입학전형 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해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해당학과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의3(편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신설 2019.03.05] ① 편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편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 ② 편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제18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 제①항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제①항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2017.08.28. 개정]
-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03.01]
  -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동일학과에 한한다.

## 제5장 전공배정,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19조(전공배정)** ① 전공배정은 학과에 따라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소속 학과의 배정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9.10.25.]
- ② 전공배정의 신청, 기준, 인원 등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복수전공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02.28.]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제20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② 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 전과의 과별 전출인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 전과는 동일계열에 한하여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삭제 2011.12.01.][복원 2019.03.05.]

⑤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학과개편 또는 폐과된 학과 학생의 전과는 본조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2.10.10.][개정 2019.03.05.]

**제21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질병 및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휴학,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

1. 군휴학: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 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창업으로 인한 휴학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4.03.01.]

④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경우 중간시험으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단, 군휴학원 제출시점부터 공결처리되며, 교과목 총수업 시간수의 결석일수가 수업일수 1/4선 이상일 경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개정 2012.03.01., 2020.08.20]

⑤ 재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단,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하고자 할 경우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8.01.31. 개정]

⑥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08.28., 2019.10.25.]

1. 군입대를 하는 경우

2. 종합병원 발급 5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3 이상 출석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4. 부모학생의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생의 임신, 출산

⑦ 창업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는 자는 휴학원에 창업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대학은 창업교육 담당 부서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다.[개정 2017.08.28., 2019.10.25.]

⑧ 졸업유급생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8.08.24. 신설]

1. 군입대를 하는 경우
2. 종합병원 발급 5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3 이상 출석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4. 부모학생의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생의 임신, 출산
5. 교육과정 상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인증제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은 휴학할 수 없다.[2018.08.24. 신설]

**제22조(복학)** ① 제21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폐과재적학생의 복학은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2/4 기간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022.08.19. 개정]

③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전역하는 군 휴학자의 경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출석 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용증, 휴가증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폐과재적학생의 군전역복학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로 학점부여가 가능할 경우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2/4 이 전까지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2022.08.19. 개정]

④ 일반휴학 중 군 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적용하여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⑤ 동일학기에 휴학원을 제출한 후 결석허용 한계일 이전에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⑥ 휴학자는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복학예정일에 복학할 수 있다.

⑦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2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학기 개시후 수업일수 1/4 기간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일수 1/4 기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3. 타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계약학과 입학생으로 재학 중 당초 계약학과 참여 산업체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 또는 계약학과 과정의 학습을 포기한 자[2017.08.28. 개정]
-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외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2(제적통보)** 제적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제적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는 졸업소요학점의 20% 내외로 편성하며 전공교과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2015.09.01.]

- ②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특성화(전문계) 고교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위한 별도반 또는 혼합반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업체와 직장인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03.01.][개정 2012.10.10.]
- ④ 특성화(전문계) 고교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입학 시까지 재직상태이어야 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2.10.10]
- ⑤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산업체 요구수준에 적합한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대학의 핵심역량과 학과의 전공역량을 반영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08.20.]

**제25조의2(사회수요맞춤형교육과정)** ① 산업기술발전·고도화에 따른 특정숙련(specific skill) 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기여하는 사회수요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내실화 및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중소기업형 인재양성(multi-tasker)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의3(계약에 의한학과또는전공설치·운영)**[2017.08.28. 개정]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전문학사취득을 위한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우선 활용하여 위탁 운영한다.

- ② 계약학과의 명칭은 계약에 따라 학과를 개설할 시점에 산업체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교육과정의 편성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주문식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연한, 졸업학점, 학사관리 등은 본 학칙과 대학의 제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따라 학기 개시 최초 학기를 2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
- ⑤ 수업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 현장실습수업 · 원격수업 및 계절제수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하고, 학교 이외에 계약관련 기관 및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이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⑥ 계약학과에 학생선발(편입학·재입학 포함)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⑦ 학생선발은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에 의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별도의 지원기관(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이 있는 계약학과의 경우, 학위과정별 모집인원은 총장과 지원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2018.01.31. 개정]

- 1. 제6항 1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 2. 제6항 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⑧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되, 제6항 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6항 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⑨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⑩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 권고사직 되거나 계약학과가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우리대학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계약학과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 ⑪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⑫ 기타 계약학과 학생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⑬ 계약학과의 학과 및 모집인원은 [별표 4]와 같으며, 학칙 제4조의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⑭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과의 학위연계형 계약학과를 철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과정 운영시 교육과정은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며 운영 결과는 정규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⑮ 일학습병행제 학위연계형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⑯ 교육과정은 산업체 등과 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반영하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⑰ 대학은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해야한다.

**제26조(연계교육과정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2(국내대학및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 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3(공개강좌[본조 신설 2020.02.28.])** ① 본대학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4(융합전공 설치·운영)[본조 신설 2023.11.24.]** ① 융합전공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어느 하나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속하지 않으며, 대학내 둘 이상의 학과(부) 또는 국내·외 대학과 서로 연계·융합하여 별도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제공하는 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학점이수)**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는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08.31., 2013.03.01]

② 학생은 매학기 16학점(간호학과 14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6학점(간호학과 14학점) 미만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2022.08.19. 개정]

**제28조(학점및교과목이수인정)** ① 연계교육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경우는 8학점의 범위내에서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K-MOOC 강좌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원격수업 학점인정 범위내에 포함되어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졸업학점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간호학과는 학기당 1학점, 연간 2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졸업학기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8.28., 2019.03.05., 2020.08.20., 2022.02.04.]

③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외국대학과 공동운영과정, 국내·외 협약대학 및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등의 학점인정 범위 및 기준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 범위 안에서 본 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3.05.]

④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 연구 또는 실습 등을 수행한 경우 연관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며 이수과목의 지정, 성적부여 등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간호학과의 경우는 간호학과교육과정편성위원회 심의를 경유하여 교무위원회에서 검토한다.[개정 2012.03.01., 2012.10.10., 2019.10.25.]

⑤ 본 대학 재학생으로 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글로벌(해외) 현장실습, 해외 어학연수 등의 국내·외 대학간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학점인정 및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2년제 과정은 1개 학기에 24학점(사회봉사 포함 25학점), 3년제 및 4년제 과정은 2개 학기에 48학점(사회봉사 포함 49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31, 2012.03.01., 2012.10.10]

⑥ 글로벌 현장학습의 평가 및 성적부여는 학사내규 및 글로벌현장학습규정에 따른다.[신설 2014.03.01.]

⑦ 본 대학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관련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경유하여 총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의 경우는 간호학과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경유하여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감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염병 등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국가 차원에서 출석수업 자제를 권고하여 LMS로 수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8.31., 2012.03.01. 2017.08.28., 2019.10.25., 2020.08.20.]

⑧ [삭제 2012.10.10]

⑨ 군 복무로 휴학중인 자가 병역 복무기간 중 평가인정 군 교육기관 및 원격강좌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할 경우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졸업학점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점인정시행세칙’을 따른다.[신설 2010.03.01, 개정 2012.10.10., 2014.03.01., 2015.09.01.2017.08.28.]

⑩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한 선수과목 이수 및 정규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습득한 근로경험, 학습경험등이 평가인정을 통하여 입증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선행학습 이수 학점인정).[신설 2011.12.01, 개정 2012.10.10.]

⑪ 졸업학년도 최종학기(계절수업 제외)에 취업으로 수강교과목의 출석수업이 불가능한 「미출석 취업자」의 경우 대학규정에 따라 수강 교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출결·출석인정,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지원자격 등의 학사관리는 「미출석 취업자 학사관리 특례규정」을 따른다.[2017.08.28. 개정]

**제28조의2(타대학과의학점교류)** ① 우리 대학교와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간에는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성적)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우리 대학교 학생이 우리 대학교와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성적)은 우리 대학교에서 매 학기에 수강을 허가한 교과목으로 당해 학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복학·재입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재입학 당시 교육과정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수업)** ① 매학기 수강신청 및 개설, 폐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11.25]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방송, 통신, Internet 등), 온라인 대체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11.25., 2020.08.20.]

③ 강좌는 08:00부터 23: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강좌 개설 학과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0.11.25.]

**제30조의1(비상운영[본조신설 2020.08.20])**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①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수업개설 및 운영, 수업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계절수업)**[2017.08.28. 개정]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휴가 기간중에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②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하로 한다. 단, 동계계절수업의 경우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감염병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하계계절 수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03.01., 2019.10.25., 2020.08.20]

③ 필요에 따라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학점을 취득할수 있다.

④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은 천재·지변, 질병 등 교육과정 운영 또는 수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환불해 줄 수 있으며, 계절수업 수강료 환불기준은 학사내규 제4조 ②항 1호에 따른다. 세부적인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3.01.]

**제31조의2(현장실습수업[본조신설 2013.03.01])** 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학기단위의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현장실습규정’에 따른다.

**제32조(집중수업)**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9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2017.08.28. 개정]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수업연한 4년제 학과의 교원은 이론수업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4년제 학과 전임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3.05., 2019.10.25.]

**제34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5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본인의 질병, 사고, 미출석 취업자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 인정 기간은 「미출석 취업자」를 제외하고 수업일수의 1/4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0.10]

② 「미출석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미출석 취업자 학사관리 특례규정」을 따른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제36조(타교생의수학)**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37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일수의 1/4기간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도,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단, 글로벌(해외) 현장학습생의 경우 글로벌 현장학습 일수를 수업일수로 인정한다.[개정 2012.10.10.]

④ [삭제 2023.11.24.]

**제38조(추가및재시험)** ① 질병, 체육특기자 학사 특례 인정 대상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08.28., 2023.11.24.]

② 정기시험 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재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sup>+</sup>급, 재시험은 C<sup>+</sup>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감염병예방 등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시험 참가를 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A<sup>+</sup>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11.25, 개정 2012.10.10., 2016.03.01., 2019.10.25., 2020.08.20.]

④ 추가 및 재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8.20.]

②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학과(전공) 및 교과목은 절대평가 하는 등 성적평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국가차원에서 출석수업 자체를 권고하여 원격수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10.10., 2020.08.20.]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③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성적이 D<sup>0</sup>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학사내규 제43조(성적정정)에 따라 성적정정 시 상대평가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2022.11.11.]

등급	배점	평점	상대평가비율	비고
A+	100 ~ 95	4.5	최대 60% 이하	상대평가
A0	94 ~ 90	4.0		
B+	89 ~ 85	3.5	제한없음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	59점 이하	미취득		
P		불계		

- ④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 ⑤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 ⑥ 성적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⑦ 성적배점이 60점 미만으로 나와 F등급을 취득한 경우 성적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평점평균 산출에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03.01.]
- ⑧ 각 교과목 총 수업일수의 1/4기간 이상을 결석하여 미취득(F)으로 처리된 경우 성적배점은 59점 이하로 한다.[2017.08.28. 개정]

**제40조(성적의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3. [삭제 2020.08.20.]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제40조의2(성적포기)** 폐과로 인하여 기수강한 학년과 동일한 학년으로 전과한 학생은 성적포기원을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취득한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성적포기는 과목별이 아닌 학기별 성적포기만 할 수 있다.

**제41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한 자는 이를 경고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제42조(졸업)** ① 총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②항~제④항, ⑦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서식 제0-1호의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졸업증서에는 교육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20.02.28.]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으로 2년제 과정은 72학점, 3년제 과정은 110학점, 4년제 과정은 13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7.08.28. 2018.01.31., 2021.02.26]

③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 단, 폐과 및 전과((轉科)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개정 2015.09.01., 2023.11.24.]

④ 졸업인증제 관련규정에 의하여 각 학과에서 규정한 졸업인증제 요건기준을 통과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졸업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4.03.01.][개정 2019.10.25.]

⑤ 위 ①, ②, ③, ④항에 해당되어 교원자격증(보건교사, 실기교사)을 취득한 졸업자 중 학교과실(행정착오)로 인하여 교원자격을 박탈당한 자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졸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재입학을 통하여 교원자격 이수 시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3.02.01., 2014.03.01.]

⑥ 제④항의 졸업인증제 요건기준 중 “창의적 직무 & 글로벌 소통 역량” 중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한 졸업유보자는 다음 학년도 이내에 “창의적 직무 & 글로벌 소통 역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수료자로 처리된다. [개정 2023.11.24.]

⑦ [신설 2020.02.28.][삭제 2021.02.26.]

**제43조(후기졸업)** 졸업인증제요건 미충족자 및 졸업학점 미달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후기졸업자는 2개 학기 내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03.01.]

**제44조(학위수여)** 본 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서식 제0-1호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단, 수업연한 4년제 학과의 경우 별지서식 제0-2호에 의해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2.03.01.]

**제44조의2(학위수여취소[본조신설 2015.09.01.])** ① 총장은 전문학사학위나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의3(교육만족도조사)** ① 대학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2017.08.28. 개정]

② 교육만족도 조사의 대상, 시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17.08.28. 개정]

**제44조의4(졸업유예[본조신설 2022.02.04.])** ① 전문학사과정의 학생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기타 졸업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수료)** 졸업인증제요건 미충족자 및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0-3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3.01.]

1. 1학년 수료: 32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64학점 이상 [개정 2014.03.01.]
3. 3학년 수료: 96학점 이상 [개정 2014.03.01.]
4. 4학년 수료: 128학점 이상[신설 2012.03.01., 개정 2014.03.01.]

**제46조(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유급시킬 수 있다. 그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4년제 학과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개정 2016.03.01.]

1. 연간 학사경고 2회 이상인 자[신설 2016.03.01.]
2. 연간 평점평균이 1.0 이하인 자[신설 2016.03.01., 개정 2023.11.24.]

## 제8장 평생교육

**제47조(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50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사항 중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9조까지의 규정은 본교 학점은행제 시행세칙 및 학칙에 따른다.

**제48조(비정규특별과정운영)**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08.31]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9조(특별과정)** ① 본 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03.01.][개정 2022.02.04.]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총장이 정하는 졸업학점이 충족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34서식에 의하여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3.03.01., 2014.03.01., 2022.02.04.]
-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03.01., 2014.03.01., 2022.02.04.]
- ④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산하기구로 각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02.04.]
- 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02.04.]

**제50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본조신설 2022.02.04.]) 본 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과명	입학정원			학사학위명	비고
	주간	야간	계		
보건복지학과	-	20	20	사회복지학사	2년 과정
합계	-	20	20		

- 제51조(시간제등록제)** ① 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등록생을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09.08.31, 2011.03.01, 2012.03.01]
- ②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09.08.31]
  - ③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수업방법, 수업일수, 납입금, 학위수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08.31]
  - ④ 시간제등록생은 시간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과목에 해당하는 납입금만을 납입한다.[신설 2011.03.01]
  - ⑤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시기는 매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까지로 한다.[신설 2011.03.01]

## 제9장 학생활동

**제52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경북보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10.25.]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 제적, 자퇴 또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학생활동제한)**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위 ①, ②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5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매년 일정수의 지도학생을 배정받아 이들 학생들의 생활, 학습, 진로 등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도과정 또는 결과를 개별학생 면담기록으로 남겨야 한다.[신설 2012.10.10]

③ 대학은 학생지도 및 상담을 위해 대학단위의 학생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학생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10.10]

④ 지도교수는 학생 상담 시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학단위의 학생지원조직을 통하여 전문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지원조직에서는 전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0.]

⑤ 평생지도교수제를 적용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도교수의 변경없이 졸업 이후에도 추수지도를 담당한다.[신설 2015.09.01.]

**제55조의2(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생활과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학생상벌, 학생복지 및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심의한다.

**제55조의3(장애학생지원[본조신설 2014.08.25])** ①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및 학내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제56조(학생활동사전승인)**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집회허가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회예정 7일전까지 학사운영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광고·간행물배포및게시)** 교내를 막론하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광고,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 1부를 학사운영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처벌)[본조삭제 2019.10.25.]**

## 제10장 규율과 상벌

**제59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0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8.27.]

**제61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과중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10.25, 2021.08.27]

1.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수업이나 연구활동에 방해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08.27.]

③ [삭제 2021.08.27.]

④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8.27.]

**제62조(성희롱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 제11장 등록금[개정 2019.10.25.]

**제63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총장이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② 실험실습비, 학생회비 및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업료는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및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정한 사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1.12.01.]

④ 총장은 학생의 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5회를 넘지 아니한다.[신설 2021.01.11.]

**제63조의 2(등록금 심의 위원회)**[본조신설 2021.01.11.]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및등록금심의위원회)③항」에 의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을 따른다.

**제64조(등록금감면)**[개정 2019.10.25.]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제65조(결석또는정확시등록금)**[개정 2019.10.25.] 등록금은 결석·정확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5.]

**제66조(등록금반환)**[개정 2019.10.25.]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9.10.25.]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3.03.01]

## 제12장 장학금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제67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로장학금 및 교외기탁장학금의 경우는 성적요건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개정 2016.03.01.]

1. 학업성적이 평균 B<sup>0</sup>급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개정 2016.03.01.]
  2. 학업성적이 평균 D<sup>0</sup>급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개정 2016.03.01.]
- ② 학비감면 및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 운영시행세칙의 제16조(장학금반환)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9.10.25.]
1. 휴학(군 입대 및 일반휴학자 중 당해학기 미등록자)
  2. 자퇴를 하거나 제적이 된 경우
  3.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4. 학업성적 또는 학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5. 국가유공학생으로 승인 또는 임명되어 직무에 태만할 경우
  6. 계출 없이 수업일수 1/4 이상 결석한 경우
  7. 학기 성적이 C<sup>0</sup>급 미만인 경우(공로장학금의 경우)[개정 2019.10.25.]
  8. 총장이 명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제13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68조(구성)** ①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9.10.25.]

②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02.28.]

③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02.28.]

④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2.28.]

**제69조(소집및심의)** ① 교수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은 총장이 되며, 의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0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교 내에서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10.25.]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2(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본조신설 2014.08.25]) ① 본 대학에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19.10.25]

## 제14장 직제

**제71조(조직)** ① 본 대학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9.03.05., 2020.08.20., 2023.09.19.]

② 각 부서의 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부서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9.19.]

**제72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0.25.]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학과사무직원들 둔다.[개정 2019.10.25.]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개정 2019.10.25.]

**제73조(교직원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학과사무직원(조교)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74조(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산업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국가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각종 산학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협력 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기관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 심의, 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총장은 대학의 전임교수, 또는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한다.
- ③ 부속 및 부설기관의 관리감독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 ④ 순수한 연구와 산학협력 업무만을 담당하는 산학협력단 소속의 교수를 둘 수 있다.
- ⑤ 산학협력단에는 별도회계를 둔다.
- ⑥ 기타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장 학교기업

**제75조(학교기업설치)**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의2(학교기업의회계처리)** 학교기업의 회계는 분리하여 처리하며, 수입금은 학교의 재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건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2017.08.28. 개정]

**제76조(학교기업의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 「계절제 현장실습」과 「학기제 현장실습」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2017.08.28.]

- ② 현장실습교육은 30시간을 이수할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현장실습교육은 방학기간에 4주, 160시간 이상을 수행한다.
- ④ 현장실습교육은 최소 2학점 이상으로 개설하여 이수한다.
- ⑤ 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7조(학교기업에서의보상금지급)**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발생시 순이익의 40% 범위 안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교직원의 연 보수총액을 넘을 수 없다.
-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수업료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④ 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6장 부속·부설기관

**제78조(부속·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 중앙도서관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2. 기숙사(한빛학사)
3. [삭제 2019.10.25.]
4. 교육방송국
5. 학보사
6. [삭제 2019.10.25.]
7. [삭제 2019.10.25.]
8. 통합정보보안관제센터
9. [삭제. 2018.01.31.]
10. 직업교육지원센터[개정 2019.10.25.]
11. 교수학습지원센터
12. [신설 2013.03.01.][삭제 2019.10.25.]
13. 현장실습지원센터
14. 취업경력지원센터
15. 창업교육센터
16. 입학홍보센터
17. 학생생활상담센터
18. 산학협력교육지원센터[신설 2020.08.20.]

② 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삭제 2019.10.25.]
2. [삭제 2019.10.25.]
3. [삭제 2019.10.25.]
4. [삭제 2019.10.25.]
5. [삭제 2019.10.25.]
6. [삭제 2019.10.25.]
7. [삭제 2019.10.25.]
8. 평생교육원
9. [삭제 2019.10.25.]
10. [삭제 2019.10.25.]
11. 지역혁신연구소
12. [삭제 2019.10.25.]
13. [삭제 2019.10.25.]
14. [삭제 2019.10.25.]
15. [삭제 2019.10.25.]
- 16.<삭제>
17. 국제화센터[신설 2016.03.01.]
18. [삭제 2020.08.20.]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19. 인성공감교육센터[개정 2019.10.25.]

③ 부속·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중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며, 중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6.03.01.]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신설 2016.03.01.]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6.03.01.]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신설 2016.03.01.]
4. 대학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6.03.01.]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6.03.01.]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6.03.01.]

④ 대학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6.03.01.]

⑤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신설 2016.03.01.]

⑥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6.03.01.]

## 제17장 보 칙

**제79조(내규및시행세칙)** ①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학사내규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규정 및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 제18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80조(학칙제정및개정예고)** 학칙을 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공고기간)** 학칙 제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2017.08.28. 개정]

**제82조(의견제출및처리)** 본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의견의 처리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및 교직원 웹메일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01.11.]

**제83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84조(공포절차및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개정 2013.03.01.]

**제85조(규칙제정및개정)** 총장이 본 학칙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5일 이상 사전공고한 후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개정 2013.03.01.]

## 제19장 자체평가[본장신설 2010.8.23]

**제86조(자체평가의정의)** ‘자체평가’란 본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 및 환경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7조(자체평가의실시)** ① 총장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본 대학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9조(평가결과의공시)**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20장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제90조(장애학생교육권보장)** ① 본 대학교는 장애 학생이 장애로 인해 입학, 수업, 교육활동,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시험 및 평가에 있어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②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인적지원, 물적지원, 취학편의지원, 정보접근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한다.

## 제21장 체육특기자 학사 특례[신설 2018.01.31.]

**제91조(체육특기자학사특례인정대상)** 본 대학교의 체육특기자 학사 특례 인정 대상(이하“체육특기자”라 한다)은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우리대학교 학생으로 한다. 단,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제외한다.

**제92조(수업대체인정)** ① 체육특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대체(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1. 육성종목(배구, 야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의 대회 출전 또는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한 이동일, 연습일, 공식행사의 경우
2. 비육성종목(골프, 체조, 수영)의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과 같은 대회 출전 및 대회참가를 위한 이동일, 연습일, 공식행사의 경우
3.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 상비군, U대표, 청소년대표의 공식소집에 따른 훈련의 경우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현장실습(교생실습) 등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수업대체(공결)는 불인정 한다.

③ 체육특기자의 수업대체(공결)는 수업시수의 1/2까지만 허용하고 수업시수의 1/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93조(시험대체인정)** 체육특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담당 교수가 제시한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 등을 하여야 시험대체가 인정된다.

1. 대회 출전 기간과 시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2.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의 훈련기간과 시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94조(육성종목및비육성종목)** 우리대학의 육성종목과 비육성종목의 구분은 제92조 1항에 명시된 종목을 제외하고 대학 교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7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김천간호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83학년도 까지로 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제3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1. 3. 1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는 1980.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2.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4.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졸업자격고사합격자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5. 1. 15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5.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5. 9. 4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6. 6. 7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정원을입학정원으로전환함에따른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 중 간호과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이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89. 10.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3. 8.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4.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따른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김천간호전문대학 재적생은 본 학칙에 의하여 김산전문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② 본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6. 3. 1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8. 1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따른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김산전문대학 재적생은 본 학칙에 의하여 김천과학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② 본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본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모집에따른학생의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당시 전자계산과, 전산정보처리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컴퓨터정보계열 소속으로 본다.

제3조(계열모집에따른학생의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당시 자동차기계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자동차기계계열 소속으로 본다.

제4조(계열모집에따른학생의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당시 피부미용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피부미용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0.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1.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컴퓨터정보계열의 입학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3년제 인가 조건에 의해 2003, 2004학년도는 정원조정신청 시 입학정원의 각 5%, 2005학년도에는 10%를 감하여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3. 9.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모집에따른학생의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당시 도시디자인계열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공간리모델링과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모집에따른학생의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당시 자동차기계계열, 경호무도스포츠과학계열, 공무원인력개발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자동차과, 경호·스포츠계열, 공무원양성계열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모집에따른학생의경과조치) 전체 입학정원은 61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컴퓨터정보계열 명칭을 인터넷보안과로 변경하고 입학정원을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 공간리모델링과 입학정원을 70명에서 60명으로 조정, 뷰티디자인계열 입학정원을 70명에서 60명으로 조정, 무도·스포츠계열 입학정원을 80명에서 70명으로 조정, 입학정원 40명의 철도경영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의개편및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종전의 학과(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및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개편및모집단위별입학정원조정)** 전체 입학정원은 61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뷰티디자인계열의 입학정원을 60명에서 55명으로 조정, 공간리모델링과 명칭을 건축인테리어과로 변경하고 입학정원을 60명에서 55명으로 조정, 인터넷보안과(정보보안전공, 웹멀티미디어전공) 명칭을 의료정보과(정보보안전공, 의료코디전공)로 변경, 자동차과의 세부전공을 자동차공학전공과 자동차튜닝전공에서 자동차공학전공과 자동차기계전공으로 조정, 공무원사회복지계열(공무원인력개발전공, 사회복지전공)을 사회복지과로 학과 전환, 철도경영과 입학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한다.

**제3조(학과의개편및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종전의 학과(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및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학교의 장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개정, 관련근거: 기획-기획-09-007(2009.02.02)]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학칙개정과 관련한 심의기능을 대학평의원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83조 개정 및 제69조 제②항 제1호 삭제, 관련근거: 기획-기획-09-008(2009.02.02)]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개편및모집단위별입학정원조정)** 전체 입학정원은 61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회복지과 입학정원을 60명에서 80명으로 조정, 의료정보과를 폐과하고 각각 30명 입학정원의 호텔관광과와 한중교류과(한국어전공, 중국어전공) 신설, 건축인테리어과 입학정원을 55명에서 40명으로 조정, 뷰티디자인계열(헤어디자인전공, 피부관리전공, 메이크업전공)의 명칭을 뷰티디자인과(헤어디자인전공, 피부관리전공, 메이크업전공)로 변경하고 입학정원을 55명에서 50명으로 조정, 무도·스포츠계열(경호·스포츠전공, 동양무예전공)의 명칭을 경호무도과(경호·스포츠전공, 동양무예전공)로 변경하고 입학정원을 70명에서 60명으로 조정한다.

**제3조(학과의개편및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종전의 학과(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계열)의 소속으로 보며 의료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된 호텔관광과 소속으로 본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09-031(2009.07.29)]

**제2조(의료정보과폐과에따른경과조치)** 의료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전과를 원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허가한다[관련근거: 학사-교무-09-064(2009.08.03).]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09-069(2010.02.10) 학칙 및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건의 건]

**제2조(학과의개편및모집단위별입학정원조정)** 전체 입학정원은 61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뷰티디자인과(헤어디자인전공, 피부관리전공, 메이크업전공) 입학정원을 50명에서 45명으로 조정, 자동차과 입학정원을 70명에서 60명으로 조정, 경호무도과(경호·스포츠전공, 동양무예전공) 입학정원을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 철도경영과 입학정원을 50명에서 45명으로 조정하고 30명 입학정원의 뮤지컬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의개편및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종전의 학과(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및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0-044(2010.11.09)].

**제2조(학과의개편및모집단위별입학정원조정)** 전체 입학정원은 560명으로 하며 뷰티디자인과(헤어디자인전공, 피부관리전공, 메이크업전공) 입학정원을 45명에서 40명으로 조정, 자동차과 입학정원을 60명에서 55명으로 조정, 건축인테리어과 입학정원을 40명에서 35명으로 조정, 경호무도과(경호·스포츠전공, 동양무예전공) 입학정원을 50명에서 40명으로 조정, 사회복지과 입학정원을 8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간 입학정원을 40명 야간 입학정원을 40명으로 조정, 호텔관광과 학과명칭을 국제호텔관광과로 변경하고 입학정원을 30명에서 35명으로 조정하며, 한중교류과를 폐과한다.

**제3조(학과의개편및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종전의 학과(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및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계열)의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1-046(2011.11.17)].

**제2조(학과의개편및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종전의 학과(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및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2-010].

**제2조(학과의명칭변경)** 뮤지컬과의 명칭을 연기뮤지컬과로 변경한다.

**제3조(학과의개편및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종전의 학과(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통합·개편 또는 학과명칭이 변경된 학과(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2011년 11월 30일 간호과 수업연한 4년제 지정에 따라 간호과의 학과명을 2012학년도부터 간호학과로 변경한다[관련근거: 전문대학과-9317(2011.11.30) 2012학년도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과정 설치대학 지정알림]. 단, 2011학년도 이전에 간호과에 입학한 학생의 소속은 간호과로 하며, 3학년 교육과정 종료 후 졸업하는 경우는 간호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2-055].

**제2조(경과규정)** 본 학칙은 2012학년도 2학기 개강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3-038].

**제2조(학과의개편및모집단위별입학정원조정)** 대학 전체 입학정원을 490명에서 422명으로 감축조정(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조정없이 200명으로 유지, 연기뮤지컬과 입학정원을 조정없이 20명으로 유지, 뷰티디자인과 입학정원을 40명에서 30명으로 조정, 자동차과 입학정원을 55명에서 40명으로 조정, 철도경영과 입학정원을 45명에서 35명으로 조정, 국제호텔관광과 입학정원을 35명에서 25명으로 조정, 사회복지과 주간 입학정원을 35명에서 25명으로 야간 입학정원을 40명에서 17명으로 조정, 경호무도과 입학정원을 20명에서 0명으로 조정하여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며 수업연한 3년제 학과인 작업치료과를 입학정원 30명으로 신설)한다.

**제3조(경과규정)** 본 학칙 제42조 제④항은 201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4-020].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4-040].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개편및모집단위별입학정원조정) 대학 전체 입학정원을 422명에서 392명으로 감축구조조정(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조정없이 200명으로 유지, 수업연한 3년제 작업치료과 입학정원을 30명으로 유지, 뷰티디자인과 입학정원을 35명에서 45명으로 조정, 입학정원 37명의 보건복지과 신설, 자동차과 입학정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 입학정원 20명의 발전플랜트설계과 신설, 철도경영과 입학정원을 440명으로 유지, 사회복지과 입학정원을 52명에서 0명으로 조정하여 신입생 모집을 중단, 호텔관광외식과 입학정원을 25명에서 0명으로 조정하여 신입생 모집을 중단) 한다.

제3조(신설학과계열분류) 2015학년도 신설학과 보건복지과의 계열을 자연과학계열로 분류하며, 발전플랜트설계과를 공학계열로 분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경북보건대-기획-15-020].

제2조(경과규정) 본 학칙은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강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경북보건대-기획-16-005].

제2조(학과별입학정원조정) 대학 전체 입학정원을 392명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학과별 입학정원을 조정(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조정없이 200명으로 유지, 수업연한 3년제 작업치료과 입학정원을 조정없이 30명으로 유지, 뷰티디자인과 입학정원을 45명에서 35명으로 조정, 보건복지과 입학정원을 조정없이 주간 20명과 야간 17명으로 유지, 자동차과 입학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조정, 발전플랜트설계과 입학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조정, 철도경영과 입학정원을 조정없이 40명으로 유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경북보건대-기획-17-009].

**제2조(학과별입학정원조정)** 대학 전체 입학정원을 392명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학과별 입학정원을 조정(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조정없이 200명으로 유지, 수업연한 3년제 작업치료과 입학정원을 조정없이 30명으로 유지, 뷰티디자인과 입학정원을 35명으로 유지, 보건복지과 입학정원을 조정없이 주간 20명과 야간 17명으로 유지, 자동차과 입학정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조정, 발전플랜트설계과 입학정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조정, 철도경영과 입학정원을 4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는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학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10조, 제68조, 제72조, 제78조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개편및모집단위별입학정원조정)** 대학 전체 입학정원을 380명에서 367명으로 감축구조조정(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212명에서 225명으로 조정, 수업연한 3년제 작업치료과 입학정원을 30명으로 유지, 뷰티디자인과 입학정원을 35명으로 유지, 보건복지과 주간 입학정원을 20명으로 유지, 야간 입학정원을 23명에서 27명으로 조정, 철도경영과 입학정원을 30명으로 유지, 자동차과 입학정원을 30명에서 0명으로 조정하여 신입생 모집을 중단)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는 2021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개편및모집단위별입학정원조정) 대학 전체 입학정원을 367명에서 357명으로 감축구조조정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225명에서 235명으로 조정, 수업연한 3년제 작업치료과 입학정원을 30명으로 유지, 뷰티디자인과 입학정원을 35명에서 45명으로 조정, 보건복지과 주간 입학정원을 20명으로 유지, 야간 입학정원을 27명으로 유지, 철도경영과 입학정원을 30명에서 0명으로 조정하여 신입생 모집을 중단)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GCH-학칙	<b>학 칙</b>	총장	이사장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23.11.24.			
면 수	39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북보건대학교 학위종류[개정 2022.02.04., 2022.11.11.]

계	학과		학위명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간 호 학 사
	작업치료과		보건전문학사
	뷰티디자인과		보건전문학사
	보건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공학계열	자동차과		공업전문학사
	발전플랜트설계과		
인문사회계열	철도경영과	철도경영전공	행정 전문학사
		철도기관사전공	
	스마트물류과		경영 전문학사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학칙 제37조 4항은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